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경 찰 공 무 원 임 용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임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자 등 부적격자를 적시에 엄격히 배제할 수 있도록 배제기준(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요건, 시보임용자 면직요건 등)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임용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9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2.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3.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퇴학”을 각각 “퇴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제4항(중전의 제2항)제1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③ 위원회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

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8조의3(임용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9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2.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3.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u>퇴학처분</u> 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u>퇴학처분</u> 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 <u>퇴교</u> ----- ----- ----- ----- <u>퇴교</u> ----- -----.
<신설>	5. <u>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신설>	6. <u>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u>
<신설>	7. <u>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u>
<신설>	② <u>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u>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① (생략)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u>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
② <u>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u>	④ ----- ----- ----- ----- ----- <u>위원회</u> ----- ----- ----- -----.

<u><신 설></u>	1.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1. (생 략)	4. (현행 제1호와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④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u><삭 제></u>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1239